

교재 정오표

과목: 최신 경찰학 객관식 (제3판)		(2025. 7. 5. 기준)
페이지 (문제 또는 행)	기존내용	수정내용
139 문 30.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	이상형 (ideal type) 관료제
156 3행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158 문 17	① 채용후보자가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①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④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④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정의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60 11행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160 20번	③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③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로서 정하여진
160 21번	③ 시보임용 경찰공무원 ~~ 둔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할 수 있다.	을 거쳐야 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 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21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시보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감봉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① [X]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견책처분은 시보임용기간에의 산입과 관련이 없다(「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 ② [O] 동법 제13조 제4항 제2호 ☐ ③ [O]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 ④ [O] 동임용령 제20조 제2항 ☐ ①	
161 문 22	㉞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할 수 있다. ㉞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따른 동의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해설 ㉞	㉞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 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여야 한다. ㉞ 임용심사위원회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㉞ [X]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정할 수 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설 ㉡	해설 ㉡ [×] 임용심사위원회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해야 한다.(동임용령 제20조 제3항).

		㉞ 작전·경호·정보· 안보 업무 담당 부서 전역				
	해설 수정					
	<table><tr><th>제한구역</th><th>통제구역</th></tr><tr><td>가.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정보통신실 나. 발간실 다. 송신 및 중계소, 정보통신관제센터 라. 시·도경찰청 항공대 마. 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 부서 전역 바.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 과학수사자료관리계·법과학분석계(시·도경찰청은 과학수사계·과학수사대)</td><td>가. 암호취급소 나. 정보보안기록실 다. 무기창·무기고 및 탄약고 라. 종합상황실·치안상황실 마. 암호장비관리실 바. 비밀발간실 사. 종합조회처리실 아. 통합증거물 보관실 자. 사건기록관·사건기록보관실</td></tr></table>	제한구역	통제구역	가.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정보통신실 나. 발간실 다. 송신 및 중계소, 정보통신관제센터 라. 시·도경찰청 항공대 마. 작전·경호·정보· 안보 업무 담당 부서 전역 바.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 과학수사자료관리계·법과학분석계(시·도경찰청은 과학수사계·과학수사대)	가. 암호취급소 나. 정보보안기록실 다. 무기창·무기고 및 탄약고 라. 종합상황실·치안상황실 마. 암호장비관리실 바. 비밀발간실 사. 종합조회처리실 아. 통합증거물 보관실 자. 사건기록관·사건기록보관실	
제한구역	통제구역					
가.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정보통신실 나. 발간실 다. 송신 및 중계소, 정보통신관제센터 라. 시·도경찰청 항공대 마. 작전·경호·정보· 안보 업무 담당 부서 전역 바.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 과학수사자료관리계·법과학분석계(시·도경찰청은 과학수사계·과학수사대)	가. 암호취급소 나. 정보보안기록실 다. 무기창·무기고 및 탄약고 라. 종합상황실·치안상황실 마. 암호장비관리실 바. 비밀발간실 사. 종합조회처리실 아. 통합증거물 보관실 자. 사건기록관·사건기록보관실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2025. 6. 3. 전부개정)					
200 문 3	㉞ 과학수사센터	㉞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 과학수사자료관리계·법과학분석계(시·도경찰청은 과학수사계·과학수사대)				
200 문 4	㉞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항공대	㉞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항공대				
205 문 15	해설 ① 모든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은 임용과 동시에 Ⅲ급 비밀취급권을 갖는다(「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15조 제1항).	① 모든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Ⅲ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제1항).				
206 문 16	①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상 모든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은 임용과 동시에 Ⅲ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②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상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보직발령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한다.	①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상 모든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Ⅲ급 비밀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상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보직발령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권을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설 ①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15조 제1항 ② 동세부규칙 제15조 제2항	해설 ①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4조 제1항 ② 동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제2항 제2호				
206 문 17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해설 ㉞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해설 ㉞ 「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				

	11조 제1항	11조 제1항
208 문 20	20.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 관한 ~~	20. 및 「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에 관한 ~~
	㉞ 비밀열람기록전의 ~~	㉞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 후에 비밀 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해설 ㉞ [x] ~~	해설 ㉞ [x]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동규정 시행 규칙 제45조 제4항).
217 문 1	해설 ④ 해산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해설 ④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41 문 47	① 25만원 상당(1인당 5만 원)의 음식 값을 ~~	① 30만원 상당(1인당 6만 원)의 음식 값을 ~~
	해설 ① ~~ : 3만원	해설 ① ~~ : 5만원
277 문 11	④ 일정한 공간에 ~~ 한다.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279 문 15	④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	④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
331 문 1	① 경과에는 일반·수사·보안·특수경과가 있다. ③ 일반·수사경과는 총경 이하, 보안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한다.	① 경과에는 일반·수사· <u>안보수사</u> ·특수경과가 있다. ③ 일반·수사경과는 총경 이하, <u>안보수사경과는</u>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한다.
	해설 수사경과·보안경과는 경정 이하에게 적용된다.	해설 수사경과· <u>안보수사경과는</u> 경정 이하에게 적용된다.
348 문 33	해설 ㉞ 경찰공무원이 ~~ 당연퇴직한다(경찰공무원법 제27조).	해설 ㉞ 경찰공무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

		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경찰공무원법」 제27조).
451 문 44	해설 ① [O] 「위해서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해설 ① [O] 「 <u>위해서</u>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460 문 58	㉞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㉞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u>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466 문 5	해설 ㉠ [x]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u>처분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u> (동법 제22조 제1항).	해설 ㉠ [x]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u>취소시 청문을 한다</u> (동법 제22조 제1항).
484 문 34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경찰청장 등이 지명한다.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경찰관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해설 ③ [x]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제1항).	③ [x]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1조제3항 제1호(소속경찰관)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동시행령 제12조 제1항). <u>[2025. 7. 30. 시행]</u>
485	지문	지문

문 35	④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	④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동의를 받아 ~~
	해설 ④ [O]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6항	해설 ④ [O] 동법 시행령 제10조 <u>제10항</u> [2025. 7. 30. 시행]
486 문 36		③ [X]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3항). [2025. 7. 30. 시행]
487 문 38	해설 ㉠ [O] ㉡ [X]	해설 ㉠ [X]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경찰관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동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항). ㉡ [X]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 한 사람이 해당된다(동시행령 제11조 제3항 <u>제3호</u>) [2025. 7. 30. 시행]
	정답 ③	정답 ④
488 문 39	해설 ㉢ [O]	해설 ㉢ [X]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10조 제9항). [2025. 7. 30. 시행]
	정답 ①	정답 ②
489 문 40	해설 ㉔ [○]	해설 ㉔ [×]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10조 제9항, 제10항). [2025. 7. 30. 시행]
	정답 ②	정답 ③
493 문 47	해설 ④ [×] 조정에 대하여는 ~~	해설 ④ [×] 조정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43조의2 제4항).
511 문 8	해설 ① ~ 인간의 행동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외부 힘의 작용이고 ~	해설 ① ~ 인간의 행동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힘의 작용이고 ~
573 문 13	①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①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576 문 1	① 수사기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	① 수사기관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

	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 등이 신청할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다)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진술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579 문 6	①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①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580 문 9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②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585 문 16	①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①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657 문 7	①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을 의미한다.	①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의미한다.
684 문 25	② 어린이통학버스가 ~~	②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699 문 1	지문 ③ 행위를	지문 ③ 행위는						
721 문 3	해설 ② [×] ~~	해설 ②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의 주최자나 시설 또는 장소의 관리자에게 행사장등에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할 때 행사의 주최자나 시설 또는 장소의 관리자에게 행사장등에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사개최일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 1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728 문 17	해설 ② [×] ~~	② [×] 경비국장이 재난대책본부장이 되고, 재난대책본부는 각 국·관의 서무과장 및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경찰 재난 관리 규칙」 제12조 제1항).						
734 문 1	④ “작전준비태세”라 함은 ~~	④ "필수요원"이란 모든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비상소집 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할 사람을 말한다.						
	해설 ④ [×] ~~	④ [×] "필수요원"이란 모든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이하 "경찰관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할 사람을 말한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 제5호항).						
736 05번	해설 중 교통비상 수정							
	<table><tr><th colspan="2">교통비상</th></tr><tr><td>갑호</td><td>농무, 풍수설해, 화재 등에 따른 대규모 교통사고 등 교통혼란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td></tr><tr><td>을호</td><td>농무, 풍수설해, 화재 등에 따른 교통혼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td></tr></table>		교통비상		갑호	농무, 풍수설해, 화재 등에 따른 대규모 교통사고 등 교통혼란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을호	농무, 풍수설해, 화재 등에 따른 교통혼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교통비상							
갑호	농무, 풍수설해, 화재 등에 따른 대규모 교통사고 등 교통혼란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을호	농무, 풍수설해, 화재 등에 따른 교통혼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739 문 10		규정 개정으로 삭제
740 문 11	해설 ① [×] ② [×] ③ [×] ④ [○]	① [×] 갑종사태가 선포된 때: 통합방위 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② [×]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동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③ [×]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동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④ [○] 동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나목
744 문 5	해설 ② [×] ~~	해설 ② [×]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762 문 2	해설 ④ 신분을 밝히거나 ~~	④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
780 문 9	④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④ 관할 경찰서장에게
784 문 17		

17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2]의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 칸의 숫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위: dB(A)]

소음도 구분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07:00~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24:00)	심야(00:00~07:00)
대상 소음도	등가소음도 (Leq)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60 이하	50 이하	(㉠) 이하
		공공도서관	(㉡) 이하	55 이하	
		그 밖의 지역	(㉢) 이하	60 이하	
	최고소음도 (Lmax)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80 이하	70 이하	65 이하
		공공도서관	(㉣) 이하	75 이하	
		그 밖의 지역		90 이하	

- ① ㉠ 40, ㉡ 55, ㉢ 65, ㉣ 75 ② ㉠ 45, ㉡ 60, ㉢ 70, ㉣ 80
 ③ ㉠ 50, ㉡ 65, ㉢ 75, ㉣ 85 ④ ㉠ 65, ㉡ 75, ㉢ 85, ㉣ 95

- ☐ ② [O] ㉠ 45, ㉡ 60, ㉢ 70, ㉣ 80
☐ ②

884
문 3

해설

- ① [O]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② [O]
 ③ [X]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선별 압수 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동규칙 제15조 제1항).
 ④ [O]

해설

- ① [O]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② [O] 제14조 제1항
 ③ [X]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선별압수 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 저장매체등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동규칙 제15조 제1항).
 ④ [O] 제5조 제2항